

보도	2026.2.4(수) 조간	배포	2026.2.3.(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은행리스크감독국	책임자	국 장 황준하 (02-3145-8350)
		담당자	팀 장 김웅겸 (02-3145-8330)
	금융감독원 은행검사2국	책임자	국 장 이지원 (02-3145-7200)
		담당자	팀 장 김혜선 (02-3145-7210)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	책임자	본부장 박진우 (02-3705-5211)
		담당자	부 장 정재호 (02-3705-5390)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마련

- 금융권 최초로 **이해관계자**와의 **부당거래 방지** 등을 위한 **지침**을 마련
- 국제기준(BCBS) 등을 반영해 **이해관계자 범위** 및 **대상거래**에 대한 **구체화** 및 **원칙적 기준** 제시
-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단계별 절차**(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및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기준**(점검결과 5년 유지 등) 도입
-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및 제보 활성화 등을 위해 **징계, 제보자 보호·보상 제도**를 마련
- 동 지침을 바탕으로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지침



I. 추진 배경

- 최근 은행권 검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그의 가족·친인척, 입행동기, 거래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여된 부당거래(대출, 임대차 계약 등)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 은행권 이해상충 관련 검사 사례

- ☑ (영업조직 - 심사조직, 직원 - 배우자 등 공모) 퇴직직원 A는 은행 직원인 배우자(심사역), 입행동기(심사센터장, 지점장) 등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알선(51건, 785억원)
- ☑ (현직임원 - 퇴직직원·거래처 공모) 퇴직직원 B는 본인소유 지식산업센터(은행 여신거래처)에 은행 점포를 입점시키고자 은행 고위 임원에게 부정청탁을 하여 점포 입점(실무직원 반대에도 4차례 재검토 지시 등)

- 이와 관련하여 BCBS은행감독준칙*은 금융회사 이해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거래***를 폭넓게 정의하고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 BCBS(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는 은행 감독에 관한 국제기구로 29개 원칙으로 구성된 은행감독준칙을 회원국에게 제시

** [이해관계자] 대주주, 임원 외에도 주요 직원, 모든 이해관계자의 가족 및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포함

***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외에도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임대계약 등 포괄적으로 정의

- 은행법에서는 이해관계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대주주(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으며,
- 은행은 이해상충 및 부당거래 방지 의무를 내규(윤리규정 등)에서 선언적으로만 규정하는 등 내부통제의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주로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며, 관련 내규, 점검 절차 및 사후 조치 등이 미흡

- 이에 은행권의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이해상충 관리 능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임직원의 인식 전환 등을 위해

-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BCBS은행감독준칙 및 최근 검사 사례 등을 참고하여 금융권 최초로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 은행권 T/F 개요

- ☑ (T/F 구성) 금감원, 은행연합회 및 8개 은행(4대 신한, 국민, 하나, 우리, 외국계 SC, 지방 부산, 특수 기업, 인터넷 케이)
- ☑ (논의과제)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①이해관계자 및 ②이해관계자 거래 범위, ③사전·사후 내부통제 절차 등

Ⅱ. '이해상충 방지 지침' 주요 내용

1

이해관계자 및 대상 거래

- 이해관계자 및 대상 거래를 정의하면서 검사 사례, 임직원의 준수 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지정·열거하되, 실질적·원칙적 기준*도 포함하였습니다.

* 지정·열거방식만으로 규정시 임직원이 열거된 자·대상 거래 이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방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오인할 소지

-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주주·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의 가족*, 기타 임직원이 본인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용하여 민법 제779조에 의한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기존 거래관계, 학연 지연 상급자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임직원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이해관계자 거래)** 이해관계자 거래는 신용공여, 지분증권 취득, 임대차·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및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다만, 전자금융거래* 등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는 제외하고,

*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직접 대면 또는 의사소통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

- 자율성·실효성 제고를 위해 은행이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금액, 거래방법 등의 범위*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매, 입찰 등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등은 제외

2

내부통제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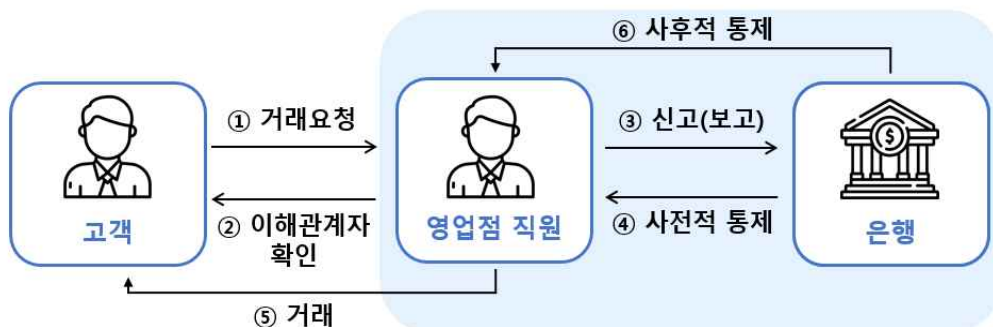
- **(사전예방)** 은행이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의 제공을 금지(Arm's Length Rule)하도록 원칙을 명시하고,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를 위해 '이해관계자 식별 → 자진 신고 → 업무제한 및 회피 → 취급 기준 강화' 등 취급 단계별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취급단계별 내부통제 절차

- ① **(이해관계자 식별)**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중간결재자 및 전결권자 등 모든 관련자의 이해관계자 여부 식별을 의무화
- ② **(자진 신고)** 이해관계자 여부를 인지한 경우 자진 신고
- ③ **(업무 제한 및 회피)** 임직원의 근무이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해당 업무 취급을 금지 또는 일정기간 제한
 - 또한, 임직원 본인이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 후 관련 업무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
- ④ **(취급 기준 강화)** 이해관계자와의 거래시 전결권을 상향하거나 의결 요건 도입 등의 취급 기준을 강화

- **(사후통제)** 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내부 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점검 결과 등을 기록하여 5년간 유지·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해관계자 거래시 업무 흐름도



- ① 고객 영업점 방문 및 거래 요청
- ② 직원 해당 고객이 본인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지(이해관계자 여부) 확인
- ③ 직원 → 은행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은행에 신고(보고)
 - ⇒ 은행 업무 취급 제한(직원 회피) [거래 진행 필요시 ④번 이동]
- ④ 은행 → 직원 전결권 상향 등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 적용
- ⑤ 직원 강화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거래 진행
- ⑥ 은행 → 직원 이해관계자 거래의 적정성을 사후 점검하고,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징계·면책 적용

- ☐ 임직원의 자기 점검 일상화, 제보 활성화 등이 조직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징계, 제보자 보호 및 보상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 내부통제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징계 대상으로 정하고, 손실 발생 여부 등은 가중 사유로 반영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은행은 자진신고 등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손실 최소화 노력,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 은행의 손실발생액 등을 징계, 감경 및 면책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아울러, 은행권이 既 시행중인 준법제보 제도*를 활용하여 제보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내·외부 신고 채널을 통해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규의 불비 등을 익명으로 은행에 신고하는 내부고발 제도

Ⅲ.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기대효과)** 동 지침은 이해관계자·대상 거래 유형을 다양화·구체화하고, 은행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요구되는 필요·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각 은행이 은행별 고유한 특성 등을 반영하여 스스로 내부통제를 보다 선진화함으로써
 - 은행권 전반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역량 제고, 조직 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 **(향후계획)** 동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26.1.26.)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되었습니다.
 - 다만, 이해상충 방지와 관련하여 금융권 최초로 신설되는 자율규제임에 따라 각 은행이 세부 내부통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데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 각 은행은 '26.상반기까지 관련 내규 마련, 시스템 구축 등을 완료하고 '26.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별첨)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 1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s.or.kr>)

BCBS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Banking Supervision
Principle 20 : Transactions with related parties

40.46 (정의)	•Related Parties(이해관계자) a. 은행의 자회사, 계열사(자회사 및 계열사의 자회사, 계열사, 특수목적법인 포함) 및 은행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b. 은행의 대주주 또는 실소유자 c.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주요 직원, 고위경영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d. a~c에 명시된 자연인과 그들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 및 가까운 가족
	•Related Party Transactions (이해관계자 거래) 신용공여, 용역거래, 자산 구매·판매, 공사 및 임대 계약, 파생 거래 등
40.47 (필수 기준)	(1) 법, 규정 등에서 규제대상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 감독당국이 개별 사례에 대해 판단 가능 (2) 이해관계자 거래시 통상의 조건에 비해 유리한 조건 제공 금지(Arm's Length Rule) (3)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위험을 초래 가능한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해 이사회 사전 승인 (4) (3)의 이해상충이 있는 이사회 구성원은 관련 거래 승인 절차에서 배제하는 정책·절차 마련 (5) 이해관계자에 대한 익스포저 한도를 설정하거나, 담보 요구 또는 자본 공제 등 조치 의무 부여 (6) 이해관계자 익스포저를 식별 및 모니터링·보고하는 정책 등 구축 (7) 이해관계자에 대한 익스포저 합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특정금액을 초과 거래 등에 대해 감독당국에 보고